

# 성매매

## 충북해바라기센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

- 성매매 사건의 처리 절차
- 성매매 상담기관



### 성매매란?

#### ▶ 성매매(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1호)

성매매란,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적행위 또는 유사 성적행위를 하는 것.

※ 유사성적행위 : 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,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 (동법 제2조 ①항 나목)

#### ▶ 성매매 피해여성(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4호)

: 형사처벌을 면제하고,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.

- 위계·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
- 보호·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
- 청소년·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·유인된 자
-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

#### ● 성매매사건의 특성

#### ▶ 성매매 피해여성 중심의 수사

인권 유린 업주 강력 처벌과 피해여성 보호·구조·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 중심의 수사체계 정립

##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

### ▶ NGO(성매매피해상담소) 연계 수사

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희생(2000년과 2002년 군산지역 유흥업소 화재로 19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)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NGO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조사과정에서 NGO(성매매피해 상담소) 활동가의 신뢰관계자 동석 및 피해여성 상담·의료·법률·자립·자활지원 등을 위한 NGO(성매매피해 상담소) 적극 연계 필요

※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우선 NGO(성매매피해상담소)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함

### | 성매매피해여성의 특성

-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한다. (업주는 선불금 관련하여 신고와 도주를 차단하는 장치로 동료간에 맞보증을 세운다)
-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한다. (낙인화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한다)
- 성 산업 현장의 존립기반인 업주, 알선책 등의 그루밍으로 인해 구조적 성 착취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길들여진다.
-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하다. (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)
- 피해사실을 알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.
-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이 생긴다.
-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생긴다. (일상성 회복에 대한 자신감 저하 및 불안감, 자원 및 일상생활 기술부족과 미래-자활·자립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 회귀성이 높다)

## | 성매매 피해의 심각성

성매매 피해여성들의 「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도(59.37)」는 베트남 전(50.6)이나 걸프전 참전군인의 심각도(34.8)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※ 대부분 두려움·무력감·자기학대·인격장애·정신분열 등 중복지해를 앓고 있음.

☞ 유입동기와 무관하게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폭력 피해를 받음

- 피해여성들은 잦은 성매매로 인해 81% 이상이 성병은 물론 질염·자궁경부염·골반염 등 평균 1~3가지의 부인과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죄의식 없이 회식·음주·접대 시 성구매

※ 경찰청 「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」에서 실시한 피해 여성 리콜 치안서비스 결과

- 성구매남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 착취 구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죄의식 없이 회식·음주·접대 시 성구매

※ 미 국방부에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성구매가 인신매매를 가져온다는 국제성매매방지 NGO 비난에 따라 성구매 미군에 대해 군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함.

### ● 성매매특별법 (04.9.23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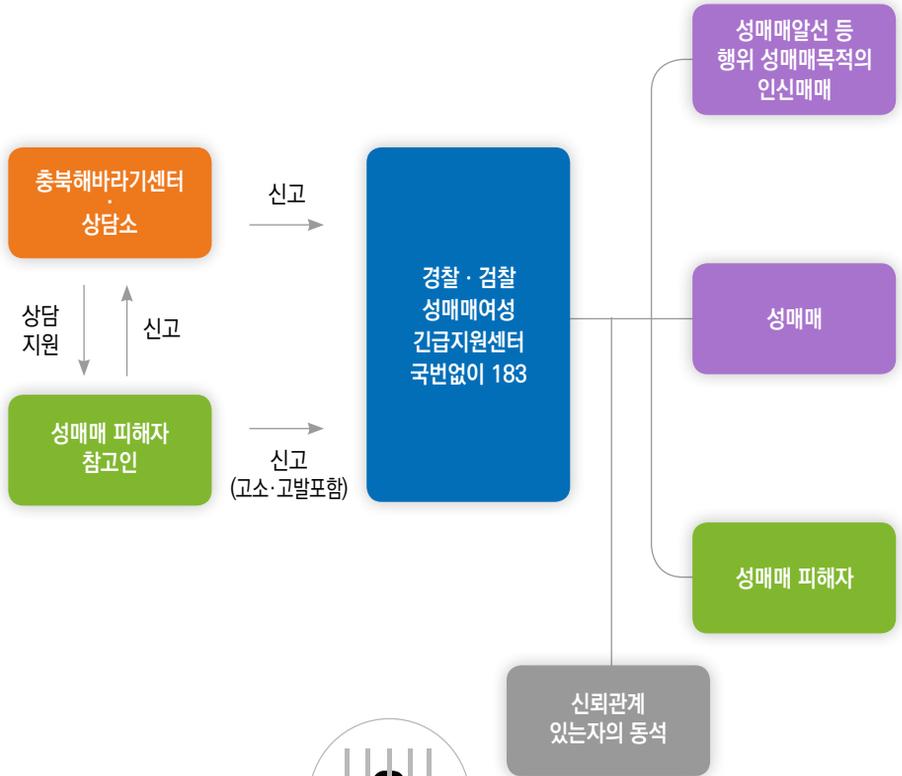
#### ▶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
-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(신변보호·신뢰관계자 동석 : 제6조·제8조)
-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세분화 (제18조~제21조)
-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몰수·추징 (제25조)

#### ▶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- 성매매여성 긴급구조요청 시 경찰관 동행의무 규정 (제12조)
-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 마련 (제14조)

## 성매매 사건의 처리절차



## 법원



### 성매매 상담기관

센터명	주소	연락처
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	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8번길 5	043-257-8297

### 여성·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

센터명	주소	위탁기관	연락처
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	서울 중구 서소문로50, 3층 (04505)	한국여성인권진흥원	02-735-7510 F.02-6363-8494